

제4장 이용계약

제10조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 ① 법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보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②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 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반드시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계약]

-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센터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이용 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 계약자의 의무
- ㉥ 계약 해지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방문 요양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월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다. 3, 4, 5,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단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시 시설 급여가능)

라.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없다,
단,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마. 방문요양 시간당 재가급여이용 금액(1회 방문 당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금액】

분류번호	방문당 시간	26년 수가	본인부담금(15%기준)
가-1	30분 이상	17,450	2,617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가-4	120분 이상	43,430	6,514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가-7	210분 이상	63,530	9,529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㉒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 ㉓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㉔ 1회 최대 180분 3회 이용가능(방문 간격 2시간)
- ㉕ 210분, 240분 수가 : 1일 1회 가능 (동수가 사용 시 다른 수가 산정 불가) 하며 2017년 3월 1일부터는 1등급과 2등급만 이용 할 수 있다.
- ㉖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 한다.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금액】

분류번호	분 류	26년 수가	본인부담금(15%기준)
나-1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차량 내)	88,990	13,348
나-2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가정 내)	80,230	12,034
나-3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60분 이상)	50,100	7,515

② 방문 목욕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실시 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라.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 목욕 차량을 보유한 센터에 협조를 구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한다.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마.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바.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사.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80%를 산정한다.

자.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5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주장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

다. 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할 의무

제 15조 【계약의 해제】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할 수 있다.

① 장기입원으로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센터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료